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24

제 출 일 : 2026. 8. 3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제안 이유

-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6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추진함.

○ 추진근거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2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
- 「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- 건강가정지원사업, 다문화가족지원사업, 아이돌봄지원사업, 그 밖에 시장 등이 건강가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3. 위탁시설 개요

○ 現 수탁기관 :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 : 함도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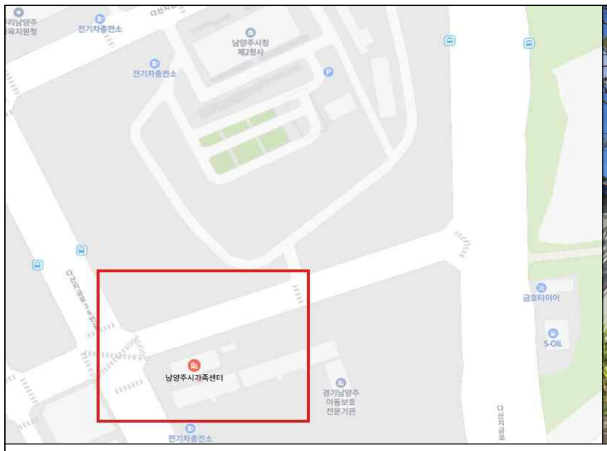
○ 現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
○ 시설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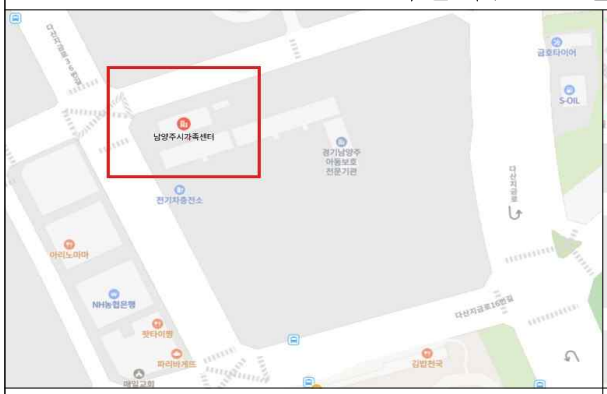
시설명	위 치	규 모	종사자	비고
남양주시가족센터	다산지금로16번길 95(다산동)	267㎡	29명	

※ 부속시설 : 한국어 교실(다산동), 공동육아나눔터(다산동)
※ 기타 종사인력 : 아이돌봄사 350명, 방문지도사 11명, 보듬매니저 2명, 시간제 3명

○ 위치도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



(본관) 남양주시가족센터
다산지금로16번길 95 (청6부지)</td></tr>
<tr><td>

(부속시설) 한국어 교실
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(별관 2층)</td><td>

(부속시설) 공동육아나눔터
다산중앙로145번길 38(다산동)
(다산역경기행복주택 상가 1층)</td></tr>
</table>

4. 민간위탁 기간

○ 2027. 1. 1. ~ 2031. 12. 31. (5년)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(재위탁) : 남양주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연간 위탁사업비 :총 11,468,738천원

- 가족사업(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) : 1,780,801천원

※ 국비 724,215천원, 도비 154,236천원, 시비 902,350천원

- 아이돌봄사업 : 9,687,937천원

※ 국비 6,650,000천원, 도비 1,481,381천원, 시비 1,556,556천원

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<table>
<tr><th>검토사항</th><th>검토내용</th></tr>
<tr><td>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</td><td>
<table>
<tr><th>단계</th><th>특성</th><th>판 단 내 용</th><th>분 류</th><th>결 정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①</td><td rowspan="2">소관사무</td><td rowspan="2">시장의 사무인지?</td><td>해당</td><td>②번 검토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보조사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②</td><td rowspan="2">공공성
공익성</td><td rowspan="2">행정서비스가 공공재에
해당하는지?</td><td>해당</td><td>③번 검토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사용수익허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③</td><td rowspan="2">非권리,
의무성</td><td rowspan="2">시민의 권리·의무와
직접 관련되지 않았는지?</td><td>해당</td><td>④번 검토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직영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④</td><td rowspan="2">전문적,
지속적
사무</td><td rowspan="2">민간의 전문성이
요구되며, 지속적 사무인지?</td><td>해당</td><td>⑤번 검토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용역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⑤</td><td rowspan="2">전체적
사무</td><td rowspan="2">서비스 공급과정의
전체적 사무인지?</td><td>해당</td><td>⑥번 검토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용역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⑥</td><td rowspan="2">경쟁
가능성</td><td rowspan="2">수탁기관 선정 시
경쟁원리의 적용이 가능한지?</td><td>해당</td><td>⑦번 검토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공공위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⑦</td><td rowspan="2">책임성</td><td rowspan="2">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
수탁기관에 귀속되는지?</td><td>해당</td><td>민간위탁</td></tr>
<tr><td>비해당</td><td>대행</td></tr>
</table>
○ 종합의견 :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민간위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.
</td></tr>
<tr><td>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d>서비스의 수혜대상</td><td>·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가 편중되지 않았는지?</td><td>■ 예</td><td>□ 아니오</td></tr>
<tr><td>서비스의 공급 지속성</td><td>· 장기 지속적이며,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지?</td><td>■ 예</td><td>□ 아니오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경제적 효율성</td><td colspan="2">· 민간기관의 기존 전문인력과 운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·재정적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.</td></tr>
<tr><td>민간의 전문성 기술성</td><td colspan="2">· 가족상담, 가족교육, 다문화가족 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함.</td></tr>
<tr><td>성과측정의 용이성</td><td colspan="2">· 이용자 수, 프로그램 운영실적, 만족도 및 사례관리 성과 등 객관적·정성적 지표를 통해 성과측정이 가능함.</td></tr>
<tr><td>관리·운영의 투명성</td><td colspan="2">· 위탁협약, 정기 지도·점검, 회계검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.</td></tr>
<tr><td>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</td><td colspan="2">· 관련 법인·단체 등 민간 서비스 공급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함.</td></tr>
<tr><td>총괄의견</td><td colspan="2">○ 가족센터는 상담·교육·사례관리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<u>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</u>으로, <u>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</u>됨.
○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·재정능력·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위탁 후 정기적인 지도·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</td></tr>
</table>

8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향후계획

- 2026. 9. ~ 10. :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6. 12.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

붙임1 수탁기관 선정심사 기준표

심사 영역	심사 지표	세부 평가지표	배점	평가 기준	평가 점수	비고
가. **수탁자의 적격성** (25)	A. 법인의 적격성 (10)	A1. 법인유형 및 설립 목적, 기관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		A2. 법인의 보유자산 (부동산, 동산 구분)	5	5억원 이상	5	
				1억원 이상~5억원 미만	3	
				1억원 미만	1	
	B. 사업수행 역량 및 공공성 (15)	B1. 해당 법인의 가족관련 사업 운영실적	5	5건 이상	5	
				3건 이상 ~ 5건 미만	3	
				3건 미만	1	
		B2. 수탁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기여도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		B3.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	5	0건	5	신생 법인 미해당
				1건 이상 ~ 10건 미만	3	
				10건 이상	1	
나. **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** (60)	C.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(40)	C1. 법인의 가족관련 사업 전문성	5	(공모·수상실적) 5건 이상	5	
				3건 이상 ~ 5건 미만	3	
				3건 미만	1	
		C2. 센터장의 전문성 (실무경력 : 가족사업안내지침 호봉 기준에 의함)	5	실무경력 15년 이상	5	
				실무경력 10년 이상	3	
				실무경력 5년 이상	1	
			5	석사이상, 자격증 유	5	
				학사이상, 자격증 유	3	
				학사이상, 자격증 무	1	
		C3.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방안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		C4.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(고용승계 및 유지, 임금체계 등)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		C5.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	10	우수	10	
				보통	7	
				미흡	5	
		C6.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	D. 재정운영 및 책임성 (20)	D1.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계획의 타탕성	10	우수	10	
				보통	7	
				미흡	5	
		D2. 신청 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		D3.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4C) 사용 여부 포함)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다. **지역사회 협력관계** (15)	E. 지역사회 협력관계 (15)	E1.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	10	우수	10	
				보통	7	
				미흡	5	
		E2.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	5	우수	5	
				보통	3	
				미흡	1	
합계			100			

붙임2 관련 법령

○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, 제35조의2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
④ 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의2(가족센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○「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2조

제12조(위탁) ① 시장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

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